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94

발의연월일: 2021. 6. 29.

발 의 자: 안규백·문정복·이형석

맹성규・서영교・김남국

김두관 · 김승남 · 조오섭

남인순 · 양이원영 · 강준현

정필모 · 이소영 · 윤관석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 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제2호의2 신설, 제38조제1항제1호, 제39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보호대상아동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

제38조제1항제1호 중 "취업"을 "취업·의료"로 한다.

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,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	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	4
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면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	
·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	
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의2. 보호대상아동이 3년 이내
	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
	을 요청하는 경우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	제38조(자립지원) ①
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	
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	
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	
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	
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	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	1
교육· <u>취업</u> 등의 지원	<u>취업·의료</u>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# <신 설>

-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) ①
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
  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
 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
  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
  원전담기관을 설치・운영할 수
 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,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